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아울러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져오는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인 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수립 및 민간활동 지원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환경교육의 지원, 환경교육 전문인력 확보와 연수 등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학교환경·사회환경·사업자환경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라.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

마. 환경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인천광역시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환경교육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체험환경교육의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확보와 연수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원
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7.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8.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 법령	☐ 환경교육진흥법 ○ 제4조(책무) ○ 제10조(사회 환경 교육의 진흥) ○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 제16조(환경 교육 센터의 지정) ○ 제17조(경비 지원 및 보조) “세부 내용 별지 작성”
관련 조례 정비 대상	
관련 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②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 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입안하여 별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요인은 예상되지 않음.

4. 작성자

- 건설교통위원회 이 도 형 의원